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62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채현일 · 이해식 · 모경중
양부남 · 이광희 · 복기왕
장철민 · 김현정 · 강준현
김병주 · 정진욱 · 박지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

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